| 주임 | 팀장 | 공사감독1처장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
| 협 조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
| 문서번호 | 공사감독1처-9425 |
|---|---|
| 보존기간 | 5년 |
| 결재일자 | 2015.10.15. |
| 공개여부 | 공개 |

# 10월 청렴의 날 운영 결과보고

2015. 10

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| 공사감독1처

# 10월 청렴의 날 운영결과

## (공사감독1처)

### □ 운영개요

○ 일　　시 : 2015. 10. 6(화) 09:00 ~ 10:30

○ 장　　소 : 3층 토닥마루 대회의실

○ 참 석 자 : 공사감독1처 직원 30명

### □ 운영내용

○ **교육내용**

- 공직기강 확립 철저 및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
- 금품, 상품권 등 선물, 향응수수 엄금

*※ 청탁금지법 『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』 중 금품 등의 수수금지 관련*

| 유　　형 | 위반시 처벌내용 |
|---|---|
| ◆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<br>◆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<br>◆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<br>◆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| ◆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<br>→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<br>◆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등<br>→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<br>◆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<br>→ 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원 이하의 벌금 |

- 근무 중 복무실태 및 기강해이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
- 사이버 교육(청렴) 수강 독려

○ **토의내용**

- 공사감독처 청렴 특별대책 사안 관련 추진방향 논의
-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 논의

끝.